개인정보 영향평가서 요약본

<table>
<tr><td colspan="2">공공기관 명</td><td colspan="6">부산광역시 강서구</td></tr>
<tr><td colspan="2">평가기관</td><td>㈜씨에이에스</td><td>평가 기간</td><td>2026.10.01 ~ 2026.10.30</td><td>평가 예산</td><td colspan="2">☐ 1천만원 미만
☐ 1천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 3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1억원 이상</td></tr>
<tr><td rowspan="6">평가대상시스템 개요</td><td>시스템명</td><td colspan="3">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td><td colspan="2">시스템 구축 또는 변경 일정</td><td>2026. 1. ~ 2026. 12</td></tr>
<tr><td>추진개요 및 목적</td><td colspan="6">•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세 부과·징수·체납관리 등 세무 업무 처리 지원
• 지방세 관계법 개정 등 외부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사용자 중심의 편의 기능 제공
• 지방세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속적인 성능 향상 필요</td></tr>
<tr><td rowspan="4">추진성격</td><td>대상여부</td><td colspan="2">•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5만 명 이상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처리</td><td rowspan="2">추진예산</td><td rowspan="2">102,650,562천원
(VAT 별도)</td></tr>
<tr><td>추진주체</td><td colspan="2">행정안전부</td></tr>
<tr><td>추진근거</td><td colspan="2">지방세기본법 제135조(지방세 업무의 정보화)</td><td>추진유형</td><td>☐ 신규 구축
☐ 변경(고도화)
☑ 운영</td></tr>
<tr><td>신기술 유형</td><td colspan="4">-</td></tr>
<tr><td>주요내용</td><td colspan="6">• 지방세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
• 지방세 관련 법·제도 개정 등 외부환경 적기 반영
• 사용자 편의성 증대를 위한 의견수렴 및 기술지원</td></tr>
<tr><td>운용체계 변경내용</td><td colspan="6">해당하지 않음</td></tr>
</t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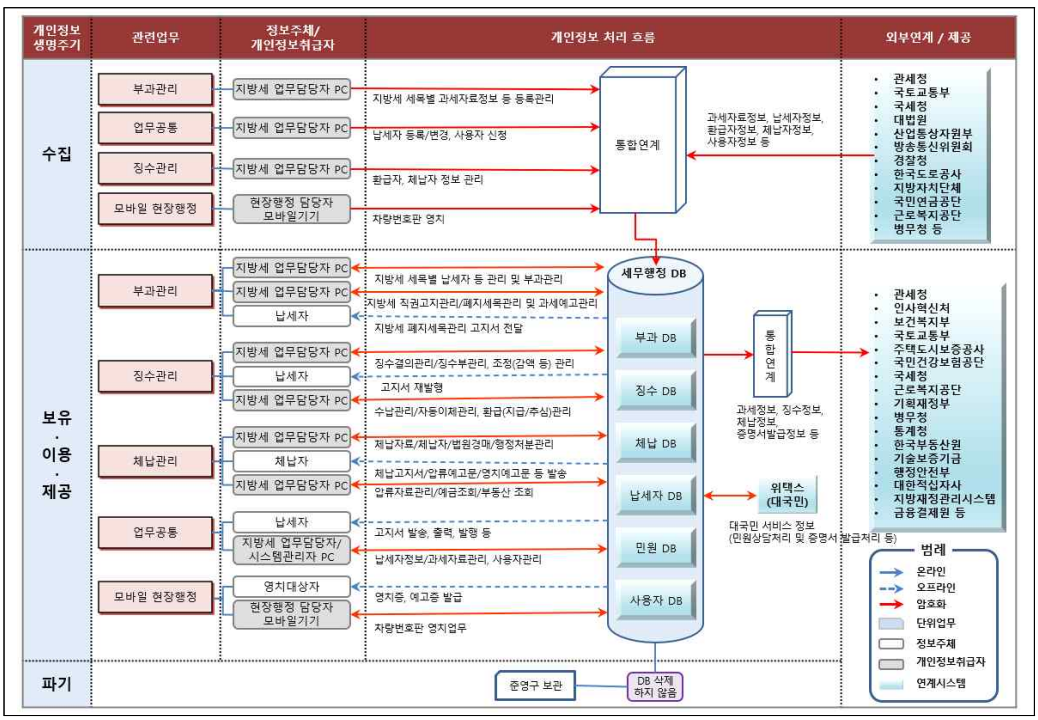
<table>
<tr><td rowspan="5">개인정보파일 개요</td><td>파일명</td><td>정보주체 수</td><td>개인정보 항목</td><td>제3자 제공</td><td>개인정보 처리 목적</td></tr>
<tr><td>(지방세) 감액관리</td><td>65,760</td><td>이름,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명, 은행명, 계좌번호, 과세정보</td><td>없음</td><td>지방세 감액 및 수정 관리</td></tr>
<tr><td>(지방세) 납세자관리</td><td>547,075</td><td>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과세정보</td><td>없음</td><td>지방세 납세자정보 관리</td></tr>
<tr><td>(지방세) 세무조사 관리</td><td>32</td><td>이름,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td><td>없음</td><td>세무조사법인 및 개인 이력관리</td></tr>
<tr><td>(지방세) 압류관리</td><td>47,667</td><td>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직장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직장명, 예금주명, 계좌정보, 자산정보, 체납금액, 과세정보</td><td>대법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국토교통부, 관세청, 금융결제원, 여신금융협회(매출채권시스템)</td><td>지방세 체납처분 관리</td></tr>
</table>

	(지방세) 재산세관리	193,578	이름,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자납부번호, 물건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주택도시보증공사, 관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국세청, 근로복지공단, 재정경제부, 병무청,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기술보증기금,행정안전부	재산세 과세자료 관리
	(지방세) 정리보류 관리	28,285	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자산정보, 납세정보, 행정처분정보, 신용정보	없음	지방세 정리보류 관리
	(지방세) 지역자원시설세관리	60	이름, 집연락처,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물건지	없음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자료 관리
	(지방세) 징수유예 관리	387	이름,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과세금액, 과세정보	없음	징수유예관리
	(지방세) 체납관리	19,721	이름,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직업, 직장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체납금액, 과세정보	행정안전부(새올행정시스템/e-하나로민원/e호조), 법무부, 국토부, 금융정보분석원, 국세청, 관세청	지방세 체납관리
	(지방세) 취득세관리	129,870	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자납부번호	국토교통부, 관세청,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술보증기금, 농림축산식품부, 주택도시보증공사	취득세 부과 관리
	(지방세) 행정제재 관리	9,188	이름,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체납정보	법무부, 한국신용정보원	행정제재 관리
	(지방세) 등록면허세 관리	203,809	이름, 집연락처,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물건지, 면허명, 면허종, 은행명, 계좌번호, 전자납부번호, 허가번호	없음	등록면허세 과세자료 관리
	(지방세) 수납관리	333,376	이름,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직장연락처, 직장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과세정보	금융결제원	지방세 수납관리
	(지방세) 자동차세 관리	137,876	이름,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차량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전자납부번호, 장애정보	없음	자동차세 과세자료 관리
	(지방세) 주민세관리	184,746	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대한적십자사	주민세 과세자료 관리

	(지방세) 지방소득세 관리	86,188	이름,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자납부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국세청	지방소득세 과세자료 관리
	(지방세) 환급관리	104,819	이름,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환급금액, 은행명, 계좌번호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시금고은행	지방세 환급관리
개인정보 처리 흐름분석					

1. 개인정보 처리 흐름
   - 차세대 표준지방세시스템은 국토교통부, 국세청, 관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안전부 등과 통합연계시스템을 통해서 과세자료정보, 납세자정보, 환급자정보, 체납자정보, 사용자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유 및 이용함.
   -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세 업무담당자는 지방세에 대한 부과/징수/체납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DB에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
   - 차세대 지방세 관련 개인정보의 보존기간이 모두 준영구이므로 DB에서 삭제하지 않음

2. 총괄 개인정보 흐름도



영향평가기준	평가기준 변경사항 및 사유	-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제2025-7호, 2025.9.5.,일부개정) 제10조(평가영역 및 평가분야), 제11조(평가항목)에 의거한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법령 개정 및 대상 시스템의 특성에 따른 평가항목을 가감하여 평가 항목으로 구성함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은 국가표준보급시스템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한('22.3) 평가항목은 본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특정 IT 기술 활용 시 개인정보보호(5장)은 평가 대상시스템과 해당 사항이 없어 본 평가대상에서 제외함(7개 평가분야 37개 항목)

<table>
<tr><td colspan="2"></td><td>- 2025년 10월 2일에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령"을 반영
- 2025년 10월 31일에 시행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반영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2025년 10월 개정) 준용
- 본 평가기관 영향평가 수행방법론 및 대상시스템 특성에 따른 평가지표 가감</td></tr>
<tr><td colspan="2">평가기준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평가</td><td><u>1.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분석평가</u>
-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 파일은「지방세법」제49조, 제130조,「지방세기본법」제135조,「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95조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고,「개인정보보호법」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관련 기관에 제공하고 있음

<u>2. 개인정보 처리,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관리 및 기술적 조치 사항에 따른 분석평가</u>
- 차세대 표준지방세시스템의 개인정보 보유기간은 지방세기본법 등 법령 기준 및 보유 목적에 부합된 기간(준영구)으로 산정하여 보유하고 있음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법령 등에 따라 적법하게 제공하고 있음
-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준영구로 산정되어 개인정보에 대해 파기는 하고 있지 않음
- 개인정보보호 업무 추진 계획에 개인정보보호 조직 및 인력 사항이 누락됨으로써, 계획된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의 실질적인 이행이 불가능해지고, 결과적으로 보안 인프라 공백 및 개인정보 침해 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함(1.2.3)
- 위탁하여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공개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 위탁 관리에 관한 내부기준이 없어 위탁된 개인정보가 남용될 위험이 있으며, 정보주체가 위탁되는 항목, 목적 등을 알 수 없게 되어 처리 정지 등의 권리행사를 제한할 수 있음(3.4.1)
- 지원 종료(또는 업그레이드 누락)된 구형 운영체제 사용으로 인해 신규 보안 취약점에 대한 패치 공백이 발생하고, 이를 악용한 랜섬웨어 및 악성코드 감염 위험이 증가함(4.5.2)</td></tr>
<tr><td rowspan="2">위험요인에대한개선조치</td><td>주요 위험요소에 따른 개선조치 방안</td><td>- 개인정보보호 업무 추진 계획 보완(1.2.3)
-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사실 공개(3.4.1)
- 운영체제 미전환 업무용PC 업그레이드(4.5.2)</td></tr>
<tr><td>위험요소에 따른 정보주체 인지사항</td><td>-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사실 공개 확인</td></tr>
<tr><td colspan="2">평가결과</td><td>• 대상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1장)는 10개 평가항목 중 해당없음으로 평가된 1개 항목을 제외하고 8개의 항목을 이행하고 있으며, 1개 항목에 대해 부분이행하고 있음.
• 대상시스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2장)는 7개 평가항목 중 해당없음으로 평가된 1개 항목을 제외하고 6개의 항목을 이행하고 있음.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3장)는 17개 평가항목 중 해당없음으로 평가된 2개 항목을 제외하고 14개 항목을 이행하고 있으며, 1개 항목에 대해 부분이행하고 있음.</td></tr>
</table>

	• 대상시스템의 기술적 보호조치(4장)는 27개 평가항목 중 해당없음으로 평가된 5개 항목을 제외하고 21개의 항목을 이행하고 있으며, 1개 항목에 대해 부분이행하고 있음. • 특정 IT 기술 활용 시 개인정보보호(5장) 7개 평가분야 37개 항목은 평가대상과 해당 사항이 없어 평가에서 제외함.